

본래적 가치와 공동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insic Value and Common Good

박 상 수*
(Park, Sang-Soo)

목 차

- I. 서 론
- II. 경제학과 윤리학
- III. 본래적 가치
- IV. 본래적 가치와 공동선
- V. 공동선
- VI. 결 론

I. 서 론

경제학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 진실을 탐구하여야 한다는 실증경제학의 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학은 인간과 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현상과 인간의 주관적 가치가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경제학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핍하게 된다.

심리현상을 배제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기계로 간주한다거나 혹은 마음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인간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는 객관적 합리성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불완전한 지식과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정보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사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분석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개인의 행동 목적은 더더욱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분석에서 제외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목적이 심리학이나 윤리학 등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경제학에서는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 혹은 국가의 목적과 같은 공동선은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공동선의 추구가 전제사회를 유발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공동선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유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선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객관적인 공동선은 처음으로 공동선 문제를 제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에게 본래적으로 좋은 것인 본래적 가치를 검토하면서, 이런 본래적 가치가 공동선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공동선이 정치철학에서 갖는 의미와 공리주의와의 관계 등도 검토하면서, 특정한 것이 공동선이 되기 위한 조건과 한계 등도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여백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루지 못한다.

II. 경제학과 윤리학

1. 목적, 수단 및 합리성

Pheby, J.(1988, pp.157-168)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미세스(Mises, L.)는 인간행동은 의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행동의 목적은 심리학이나 윤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행동하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갖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도에 반영되는데, 그런 의도에 반영되는 목적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미세스는 방법론적 개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제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런 개개인의 매우 다양한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다.

따라서 미세스에게 의미있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 결국 경제학은 주어진 목적을 성취시키는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소위 하

이에크(Hayek, F. A., 1937)가 언급하는 선택에 관한 순수논리학이 될 것이다.(p.57) 이 때 합리적 선택은 수단이 합리적으로 선택되었느냐에 있으며, 이 때의 합리성은 행동하는 주체의 목적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즉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해서 합리적 선택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페비(Pheby, J., 1988, pp.159-160)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는 객관적 합리성 하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할는지 모르나,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은 행동하는 개인이 그 목적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 행동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의 행동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는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행동할 때의 상황에선 그 선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행동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가가 낙관적인 기대 하에서 특정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상황은 기업가의 기대와는 대단히 상이하게 변동하였고, 사업은 망하였다. 그러면 이 때 이 기업가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가? 오스트리아학과는 이 기업가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기업가가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의 투자환경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및 지식 하에서 그는 그런 의사결정 이외에는 다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그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의사결정은 그에게 오히려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 공동선과 경제학

방법론적 개체론을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에서는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는 경제학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수단의 선택만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은 경제 전체의 공동 목표와 같은 공동선(common good)에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런 공동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그런 공동선은 수단을 합리화하며, 그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 혹은 독재를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국가에게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는 공동선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개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치철학에서도 공동선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공동선으로 적합한가? 등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런 공동선은 국가의 도덕적 기능 혹은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며, 이런 목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적 성향을 가

1) Raphael, D. D.(1970), pp.138-140; Quinton, A.(1973), pp.271-78; Baruzzi, A.(1983), pp.221-4을 참조하시오.

진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제학에서는 이런 공동선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선과 관련된 논의들이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있는 규범경제학의 범주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제학은 가치로부터 독립된 객관성을 중시하는 실증경제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정책의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치에 관한 문제가 개재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 혹은 국가의 목적과 같은 공동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혹은 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경제정책의 목표를 통해서 성취될 수는 있으나 그 목표는 사회 혹은 국가의 목적 그 자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목표도 사실은 경제학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그 결과 어떤 목표를 경제학의 중심과제로 보느냐에 따라 학파가 분파되기도 한다. 그만큼 경제정책의 목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문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경제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공동선의 문제가 경제학에선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경제학계의 현실인 것이다.

III. 본래적 가치

1. 정의와 선

윤리학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대하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도덕적으로 옳은(morally right) 행위는 도덕과 무관하게 좋은 것(nonmorally good)과 관련이 있는가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도덕과는 무관하게 좋은 것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척도로서 유용성(utility)을 들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유용성이 있다면 그 행위는 옳은 행동이라고 판정한다. 물론 유용성이 없다면 그 행위는 당연히 옳지 못한 행위가 된다.

유용성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유용성이 개인에게 혹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인가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또한 결과를 중시하는가 혹은 과정을 중시하는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Taylor P.W., 1975, pp.83-115 참조).

반면에 칸트에 의해 대표되는 윤리적 형식주의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와 도덕과 무관하게 좋은 것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용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본의 아니

게 인간을 수단으로 다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인간은 목적 자체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 형식주의의 지론인 것이다.

따라서 정의도 “한 규칙은 만약 그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규칙을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오직 그때에만 정의롭다”라고 정의하고 있다(Taylor P.W., 1975, p.156).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도덕과 무관한 관점에서의 좋은 것(good)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환언하면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그 종류의 행동에 부여되는 가치이며, 그리고 그런 가치는 도덕과는 무관한 어떠한 가치표준에도 의존하지 않는 도덕원리에 의해 정의된다.

2. 본래적 가치

본래적으로 좋은 것을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본래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본래적으로 좋은 것은 대체적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바라는 것이어야 하며, 비파생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래적 가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가치는 다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본래적 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목적으로서 좋은 것”이어야 하지,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더 높은 목적으로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은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바로 본래적 가치인 것이다.

둘째로 본래적 가치는 비파생적이어야 한다는 속성을 갖는다. 본래적 가치를 보유한 어떤 것이 “본래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외래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라 “본래적인” 속성 때문에 가치를 부여받을 때 혹은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오직 그때에만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²⁾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을 본래적으로 좋게 만드는가? 무슨 척도에 의해서 우리는 본래적 좋음을 결정할 수 있는가? 즉 본래적 가치의 근거 및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쾌락”일 것이다.

쾌락이 본래적 가치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쾌락주의(hedonism)라고 한다.

2) 예컨대 어떤 사람이 테니스 경기에 대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테니스 경기를 함으로써 건강해지거나 유명해지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사귄 수 있기 때문에 테니스 경기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경기가 단지 테니스 경기라는 이유만으로 테니스 경기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쾌락의 원천이 무엇이든 모든 쾌락은 본래적으로 좋으며, 나쁜 쾌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쾌락 이외에는 본래적으로 좋은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쾌락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즐겁거나, 만족스럽거나 혹은 좋아하거나 등과 같은 경험적으로 느끼는 유쾌한 경험을 함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쾌락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동물적이고 천하며 품위가 없는 그런 쾌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유쾌한 경험을 쾌락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쾌락이라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행복이다. 만약 인간이 유일한 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은 당연히 본래적 가치의 표준을 충족시킬 것이다.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은 쾌락, 즉 유쾌한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쾌락, 즉 유쾌한 경험을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본질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인간적인 완성, 즉 인간의 능력에만 특유하게 적합한 완성에 대한 하나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선(善)을 실현시킨 경우에 성취된다고 본다. 어떤 개인이 이런 이상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는 인간의 잠재능력을 실현하지 못하며, 반면에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한, 그는 그의 인간적 본성을 명백히 드러내며,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유하게 된다. 행복의 실현은 곧 이상의 실현이다. 즉 진실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선을 실현한다.³⁾

다른 한편 행복을 인생 계획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생계획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의 변동을 인식하고 여러 목표에 대해서 먼저 추구할 목표와 그 수단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서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

이런 행복 개념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목표와 수단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과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행복과 쾌락의 차이를 검토해 보자. 자율적으로 선택한 인생계획은 목적 자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목적을 성취함으로써도 만족 및 쾌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쾌락의 극대화를 인생의 다른 목표보다 우위에 놓아야 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쾌락의 극대화는 인생의 목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만족과 관련해서도 행복한 인생은 목표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며 목표의 실현만을 중시하지는 않는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 행동하는 인간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

3)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을 본래적 가치라고 부르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견해는 Terchek, R.J. and Moore, D.K.(2000), p.907을 참조하시오.

계획을 그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전체적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기 평가적인 개념으로서의 행복의 개념이 존재한다.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이때의 행복은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인생 경험에 우리의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즉 “내가 행복하다”는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 때에만 “그가 행복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행복과 쾌락 중 어느 것이 본래적 가치에 더 적합한지 검토해 보자.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자기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올바르게 평가한다면 고통은 피했으나 불행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쾌락은 전체적 삶의 비가치, 즉 불행에 의해서 측정된 비가치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쾌락을 경험하면서도 불행한 것보다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것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쾌락보다는 행복이 본래적 가치의 적절한 표준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쾌락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IV. 본래적 가치와 공동선

1. 본래적 가치와 공동선

본래적 가치를 행복으로 간주하든 쾌락으로 간주하든 발생하는 문제는 본래적 가치가 객관적인 본래적 가치인가 주관적인 본래적 가치인가이다.

도덕과 무관하게 좋은 것으로 쾌락을 추천했고, 이런 쾌락이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벤담의 공리주의의 최대 약점은 쾌락이 측정 가능한가이다. J.S.밀은 처음에 벤담의 공리주의에 설득되어서 벤담이 주도했던 철학적 급진파에 가담했고 지도자가 되기도 했지만, 쾌락의 측정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서 철학적 급진파에서 벗어나기도 했다(Landreth, H. and Colander, D.C., 2002, pp.169-70 참조).

그리고 행복을 본래적 가치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행복이 각자에 따라 전혀 상이한 가치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역시 주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생 계획적 행복

4) 본래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Taylor, P. W. (1975), pp.157-96을 많이 참조하였음.

혹은 자기 평가적인 행복의 개념 모두 개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표준이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 본질주의적인 행복의 개념 역시 개개인이 설정한 이상(理想)이 개인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주관적이라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개인에게는 본래적 가치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 혹은 국가 전체 혹은 전세계에 대해선 본래적 가치를 상정할 수 있겠는가? 사회 전체 혹은 전세계가 도덕과는 무관하게 좋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정치철학에서 논란을 빚고 있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일 것이다.

아마도 공동선의 개념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모호한 개념 중의 하나이면서 명백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의 구체적인 내용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부분이다.

2. 정치철학에서의 공동선

정치철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은 정의(justice)의 개념과 더불어 국가의 목적과 관련된 논의에서 현재 매듭지어지지 않은 중요한 개념이다.

공동선과 관련된 논의는 원래 “왜 국민들은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가”, 즉 국민의 정치적 의무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법률에 복종하는 데에는 첫째로 그런 복종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가와 관련된 타산적인 생각이 개재할 수 있다.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견해는 국민이 복종을 요구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혹은 통치자가 어떻게 복종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로 복종 받을 국가의 권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타산적인 의무는 쉽게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의무를 국민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국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를 도덕적 의무에서 찾는 이론들로는 사회계약론, 동의론, 일반의지론 등이 있으며, 그리고 국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론과 공동선 이론이 있다(Raphael, D. D., 1970, pp.112-40 참조).

3. 공리주의와 공동선

공동선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공동선이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바로 이런 주장은 목적론적 공리주의의 공통적인 주장이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선 공리주의 내부에선 커다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론적 공리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쾌락 혹은 행복을 증가시켰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그 행동이 자신의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개개인의 행동이 국가의 공동선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그 행동은 불공정한 행동이 되며, 반면에 국가의 공동선을 증대시켰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공정한 행동이 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국가의 공동선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선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국가가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공동선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행동공리주의자로 알려진 결과론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본래적 가치인 쾌락이나 행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유용성(utility)을 공동선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벤담이 언급하는 것처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상화할 수 있는 복지 혹은 사회적 후생을 제시하기도 한다.

V. 공동선

1.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공동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기원을 갖고 있으며, 그 개념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이해관계간의 관계를 생각해 함으로써 정치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공동선의 개념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체와 관련된 선(좋은 것)이며 그리고 오직 그 공동체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선이지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개별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선이다(Smith, T.W., 1999, p.625).

이런 공동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념은 그것이 어떤 개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선)이어야 한다(Younkins, E.W., 2000, p.49). 공동체의 공동선이 개인과 유리되거나 혹은 개인의 선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될 때, 공동선은 다수의 선으로 해석되려는 경향을 갖는다.

공동선은 다수의 선은 결코 아니며, 개개인의 좋은 것과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공동선은 개개인의 선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개인의 선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즉 공동선과 개개인의 선 사이에는 어떤 계층구조도 존재해선 결코 안 된다.

만약 공동선과 개개인의 선 사이에 계층구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공동선과 개인의 선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때 개개인의 선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선을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개인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공동선을 개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게 된다.

2. 가정과 공동선

가정에서의 공동선을 먼저 검토한 연후에 공동체의 공동선을 살펴보자. 가정은 성인 남녀로 구성되며, 이때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소위 성적인 차이를 가지며,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게 만든다. 가정의 공동선이 아이들이라면 남녀의 성적 차이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남녀의 성적 차이가 독신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한다. 즉 “출산에 있어서 배우자의 (성적) 차이는 공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삶을 가져옴으로써 서로를 보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Smith, T.W., 1999, p.632) 또한 육아와 청소년기의 가정에서의 지도를 통해서 부부는 상호보완의 기회를 가지며, 서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된다. 부모의 역할을 자식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의 역할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의 상이한 구성원 각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불완전한 구성원들이기는 하지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서로 보완함으로써 상호 완성을 이룬다.

가정의 구성원 각자는 개인적인 차이를 통해서 가정의 공동선(여기서는 대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완성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성원의 다양성이 상호 완성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체와 아리스토텔레스 및 공동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공동체의 공동선과 관련하여, 불공평이 공동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은 자기애(self-love)를 교화하는 데에 의존하므로, 정치공동체는 시민계급의 형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mith, T.W., 1999, p.633)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박애적인 시민계급의 형성은 정치공동체의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애에만 충실한다면, 즉 명예, 권력, 실물재 등

과 같은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갖는다면, 불공평이 불가피하게도 출현하며, 그에 따라 공동선의 증진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에서의 공동선은 자기애의 교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자기애의 교화를 통해서 불공평이 완화되며, 그 결과 공동선의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즉 자기애의 교화는 경쟁과 정치적 지배를 완화시킬 것이며,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한 재화에게로 인간의 욕망을 인도할 수 있다.

인간 성향의 방향 전환으로부터 결과하는 공동선은 봉당적인 투쟁을 감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는 경쟁적이고 착취적이라기보다는 협동적이며 공생적인 성격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돈, 권력, 지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완화됨으로써 봉당적인 투쟁이 감소하고, 공동체가 보다 더 박애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의 조건은 인간 성향의 방향 전환이지만, 이런 방향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을 선한 사람으로 개조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를 찬성하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 데서 비롯하며, 이런 다양성의 인정은 국가 혹은 공동체에 의한 획일적인 목적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⁵⁾

4. 자유주의자와 공동선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으로 공동선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공동선이 정치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공동선이 선택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공동선은 구성원들간의 완전한 의견일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J.S.Mill 같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나은 판단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므로 어떤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리고 어떤 사회도 공동선의 개념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반목적인 T.Hobbes 같은 학자는 공동선을 위한 비재량적이면서 비전제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고의 선(summum bonum)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mith, T.W., 1999, p.625)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좋은 것이라고 완전히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공동선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혹은 국가가 어떤 것을 공동선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전체국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유주

5) Smith, T.W., pp.634-5를 참조하시오. Terchek, R.J. and Moore, D.K.(2000)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Smith의 해석이 윤리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정치적인 측면은 경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의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공동선을 이야기하고 공동선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자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공동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가 70년대 이후 득세하면서 공동선에 관한 논의는 소멸하다시피 하였다.

VI. 결론

개개인의 선은 개개인의 노력과 끈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국가 혹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생존, 안전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전체의 선은 개개인의 선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개개인의 선과는 별개로 결정될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과 관련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유재산제도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제도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선을 성취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개개인의 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선을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치안과 국방과 같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개개인은 자신의 선을 최대한 많이 성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의 선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공동선에 관한 문제가 자유주의의 득세와 더불어 무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선의 추구가 개인적 자유를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전체주의 국가를 탄생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목적론적 윤리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복지, 유용성 등을 공동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런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가 억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공동선은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는 개념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공동선을 개개인과 가정의 번영에 필요한 수단 변수로 간주한다면(Pakaluk, M., 2001 참조), 자유주의에서도 공동선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자유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의 공동선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개인의 선과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개개인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에게 합당한 공동선은 개인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Pakaluk, M., 2001, p.49 참조). 공동선이 수단 변수라고 할 수 있는가와 만약 수단 변수일 때 공동선이 개인적 자유일 수 있는가에 관해서 본 논문에서는 논의할 기회가 없었지만, 논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상수(2000), “하이에크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3호, pp.176-197
- Baruzzi, A.(1983),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r Neuzeit*(이진우 역, 『정치철학』, 서광사, 1991),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Hayek, F. A.(1937),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IV(new ser.), pp.33-54.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박상수 역,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자유기업센터, 199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Landreth, H. and Colander, D.C.(2002), *History of Economic Thought*, 4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 Pakaluk, M.(2001), “Is the common good of political society limited and instrumental?”, *Review of Metaphysics*, vol.55, pp.57-94.
- Pheby, J.(1988), *Methodology and Economics: A Critical Introduction*(박상수 역, 『경제학방법론: 비판적 입문』,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MacMillan Press.
- Quinton, A.(1973), *Political Philosophy*(장을병 역, 『정치철학』, 종로서적, 1984), Oxford University Press.
- Raphael, D. D.(1970), *Problems of Political Philosophy*(김용환 역, 『정치철학의 문제들』, 서광사, 1986), Praeger Publishers, Inc.
- Smith, T.W.(1999), “Aristotle on the Conditions for and Limits of the Common Go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3, no.3, pp.625-36.
- Taylor, P. W. (1975), *Principles of Ethics* (김영진 역 :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90),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 Terchek, R.J. and Moore, D.K.(2000), “Recovering the Political Aristotle: a Critical Response to Sm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4, no.4, pp.905-11.
- Pakaluk, M.(2001), “The Common Good Demystified”, *Ideas on Liberty*, vol.50, no.5, pp.48-9.